

I. 서론

I. 서론

얼마 전 한국투명성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한국의 중학생중 20.9%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 원을 벌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 중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대가만 주어진다면 자의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의식이 행위를 규정한다는 명제는 다소 진부하게 들리기는 하나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감, 더 나아가 법에 대한 사고가 이들의 미래 행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자명하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법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의의는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의 알고자 하는 무엇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실태와 내용의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적 논의나 개입은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오히려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다.

일찍이 법과 사회에 대한 연구자들은 “법률가들의 법”에 대한 연구로부터 일반인들이 법적 행위들이나 이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옮겨갔다(Silbey, 2005: 326-327). 즉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 실제적인 법의 효과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에 대한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의 지배를 이야기 할 때 재판 등과 같이 표면적이고도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법적 행위들은 사실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실상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들을 통해서 법의 지배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Silbey, 2005: 332). 법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녹아들어있음으로 해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근본적으로 법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법과 관련된 사회화를 통해서 이른바 법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법의식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든지 집합적인 수준에서든지 실제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법사회화(legal socialization)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Fagan and Tyler, 2005). 일반적으로 사회화는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다르다. 특히 법과 관련된 사회화는 청소년기에 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법의식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개인의 인지 및 도덕 발달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이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의 실제적 작동에 대한 분석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느슨하고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법의식은 “보통 사람들이 법과 법제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Ewick and Silbey, 1992: 734). 이와 같이 법의식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에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좁게 정의하자면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넓게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갖는 생각 내지는 견해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 내지는 견해’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보자면, 법에 대한 태도(attitudes), 믿음 내지는 신념(beliefs), 가치(values), 그리고 지식(knowledge)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법의식’이란 다른 아닌 법에 대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적 차원에서 반영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문화적 특징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의식’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은 이러한 무궁무진한 연구 지평을 열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기에 중요하다.

Ⅱ. 법의식 개념 및 정의

II. 법의식 개념 및 정의

법의식에 관한 논의는¹⁾ 법의식보다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차원인 법문화(legal culture)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법체계의 구조적 요소인 법조직과 실질적 요소인 법규범이 특정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적 측면으로서 법문화(legal culture)이다. 법문화라는 개념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규정을 따르자면 법문화란 한 사회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 등의 심리적 차원과 법과 관련된 일반적 행위양식의 행위적 차원으로 분류 가능하다. 법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주제의 예를 들어 보자면, 현재의 법규에 대한 지식의 정도, 법 체계와 집행의 정당성, 사회적 갈등 해결시 법에 대한 의존 정도, 사회통제 수단으로서 법에 대한 인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의식은 법문화의 심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²⁾. 법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 가지는 사상이나 감정, 인식, 견해 따위를 일컬음” 혹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혹은 역사적 영향 하에서 형성된 감정, 견해, 사상, 이론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사전적 정의일 뿐, 법의식에 내포하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 1) 법의식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디까지를 ‘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관에 따라 개별적인 법규에 대하여 때로는 일관되지 않은 의식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방대한 법체계는 심지어 법률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의 전부를 알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는 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식의 형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 일반적으로 법의식을 주제로 한 과거 경험적 연구들은 현실규범보다는 오히려 법원리(legal principl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적 조사내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일반상식이나 사법당국에 대한 태도, 법의 위신 내지는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법의식과 법문화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일의 법사회학에서는 법문화와 법의식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의식을 법문화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법의식은 법문화나 법감정 등과는 구별되며, 법의식이란 다양한 법 현상 가운데 인지적 요소가 지배하는 특수한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유사한 개념들인 법문화나 법감정 등과도 구분이 어렵게 된다.

법의식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크게 넓은 의미의 법의식과 좁은 의미의 법의식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넓은 의미의 법의식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인정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황을 총 망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법의식은 행위결정의 기준으로서 법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법인식, 법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법적 가치판단, 그리고 법에 대한 호감 내지는 비호감등과 같은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감정을 포괄하게 된다.

좁은 의미의 법의식은 법의식과 법감정을 분리한다. 이 때 법의식은 인간의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에 의한 법의 정의(definition)이나 법의 당위(what should be the law?)대한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법의식을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비록 법의식과 법감정을 구분하여 정의 하고는 있으나 이는 추상적이고 이념형(ideal type)적인 차원에서의 구분이며 현실 속에서 개인의 법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법감정이 끊임없이 녹아 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한다. 어느 정의를 따르건 간에 법의식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법’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현상들을 내포하고 있다(Ewick and Silbey, 1992: 736). 법이라는 말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연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방법원을 떠올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 검찰,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법행위자들의 직무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따라 주차위반 딱지나 음주 나이 제한, 혹은 세금 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에는 법을 도구로 이해하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이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이 종종 지적된다.

이를 ‘도구주의적 법률관’이라고 칭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양건, 2000: 254). 하나는 법을 지배의 도구로 파악하

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법을 편의의 도구로 파악하는 관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저항의 도구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법이 개인에게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틀로 이해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제시되고 있다 (Ewick and Silbey, 1992: 738). 법의식이 곧 권리의식과 의무의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영희, 2003: 180). 이 견해에 따르며 권리의식은 법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그 권리의 행사와 보호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의무의식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알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두 측면 모두 법의식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여러 가지 법의식 정의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법의식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법의식과 법감정의 구분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념형적 이어서 경험적 적합성이 빈약하다. 둘째, 본 연구가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임을 감안 할 때 법의식과 법감정에 대한 지나친 개념상의 구분은 오히려 연구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청소년의 법관념을 법의식과 법감정으로 뚜렷하게 구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과거 법의식 연구들 또한 광의의 법의식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법의식이란 법적 인식, 법적 판단 내지는 평가, 그리고 법감정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인식이란 법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인지(knowledge)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가 법규범을 행위의 잣대로 인지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 법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특정 법 현상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 및 그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법감정이란 사회구성원이 법현상에 대하여 내리는 정서적 태도나 반응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적인식이나 법적 판단에 비하여 다분히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Ⅲ. 청소년의 법의식

1. 청소년 법의식의 이론적 논의
2. 청소년 법의식 척도개발
3. 대표적 법의식 척도 소개
4. 종합논의

III. 청소년의 법의식

1. 청소년 법의식의 이론적 논의

성인의 법의식 연구와 달리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법의식 자체 보다는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이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다(문용린, 1994; 이수성, 1984; 김준호, 1996). 법의식에 대한 정의 또한 모든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적 특수성이나 법적 지식의 일천함 등을 고려하여 광의의 법의식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법의식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는 이수성(1984)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국 청소년들의 법, 범죄, 그리고 형벌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조사연구한 그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을 일반 성인에 비하여 법에 대하여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접근하고 있으며, 긍정적 태도보다는 부정적 태도가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법을 인권이나 권리의 측면 보다는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였고 법에 대한 소외감 보다는 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청소년 법의식 연구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조사도구³⁾를 사용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보다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청소년 법의식 측정도구는 이후 문용린(1994)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문용린은 그의 연구에서 Piaget, Kohlberg, 그리고 Tapp & Levine의 도덕성 및 법의식 발달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법의식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부록 참조). 위에서 열거된 학자들의 도덕성 및 법의식 발달 이론은 본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그들의 이론을 보다 자세하

3) 이수성의 연구에서 조사된 법의식의 측면들은 법에 대한 지식, 법의 본질 및 기능에 대한 평가, 법수호이유, 법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측면(법으로부터의 소외감, 법에 대한 신뢰감,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 범죄 및 형벌에 대한 태도들이 있다. 보다 자세한 조사 문항을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게 소개하도록 한다.

Piaget의 3단계 법의식 발달론에 따르면 첫 번째 수준은 자아 중심적 법의식이 발달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6세 이전의 아동에게서 관찰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집단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의 행위로부터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나 잘 되지 않을뿐더러 규칙 전체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이다. 두 번째 발달 수준은 타율적 법의식이 발생하는 단계로서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주로 관찰되며 규칙을 신성불가침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직까지 규칙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규칙의 기계적 습득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마지막 발달 단계는 자율적 법의식 단계로서 11세 이상의 아동에게 나타나며 가장 특징적인 인지적 발달은 “규칙과 법이란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규칙과 법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고 또한 가능하게 된다.

Piaget의 3단계 법의식 발달단계 이론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이 반드시 법적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법에 대한 정서적 판단과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즉 법과 규칙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도덕성이나 법의식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Piaget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 Kohlberg는 Piaget의 이론에서 드러난 문제들, 예를 들며 법의식과 도덕성 발달의 구조적 유사성, 도덕성 발달의 문화적 상대성, 그리고 선형적 모형의 법의식 발달과정 등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화된 법의식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Kohlberg에게 있어서 도덕성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으로서의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지능력으로서의 도덕적 추론은 어떠한 갈등상황에 처할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논리의 구조를 말한다.

무려 20여 년 간의 종단 및 횡단 연구를 통하여 Kohlberg가 제시한 6단

계 도덕성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습이전수준 혹은 규칙에 복종하는 단계 (pre-conventional level or rule-obeying stage)에서 1단계와 2단계가 있다. 1단계에서는 “옳은 것”에 대한 관념이 외부의 제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아동들이 옳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체벌을 피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다. 2단계는 도구적 이기주의 단계로서 이 시기의 “옳은 것”이란 나에게 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3단계와 4단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습수준 혹은 규칙유지적인 단계 (conventional level or rule-maintaining stage)에 다다르게 된다. 3단계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에 대한 애착이 바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 시기의 옳은 것이란 바로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도움과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4단계는 “옳은 것”의 정당성을 전체 사회의 질서 유지에서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옳은 것”이란 사회, 더 나아가 국가나 민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가장 발전된 차원의 법의식은 관습이후수준 혹은 규칙을 형성하는 단계 (post-conventional level or rule-making stage)인 5단계와 6단계에서 발생한다. 5단계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법이 사회구성원들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인 6단계는 보편적 윤리의 단계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간사회의 보편적 윤리가 현실에서 발현된 것에 근거한다. 아래의 표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과정

도덕판단수준	사회적조망	도덕적 판단 단계
I. 관습이전	기계적이고 개인적인 조망	1. 처벌과 복종
		2. 도구적 상대주의자
II. 관습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조망	3. 상호간의 동조
		4. 사회질서의 유지
III. 관습이후	사회선행적 조망	5. 사회계약
		6. 보편적 윤리

Tapp과 Levine (1977)은 Kohlberg의 6단계 발달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연령층 아동,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법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예를 들면 정의, 평등, 권위, 처벌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반응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는 Kohlberg가 제시한 발달 경로를 따르고 있음이 밝혀 졌다.

위에서 열거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문용린의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과 법의식 및 비행경향성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도덕성, 법의식, 비행경향성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획득된 자료 분석 결과 도덕성 수준과 법의식 발달 수준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행경향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거 청소년 법의식 연구들이 대부분 일련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법의식 현황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 반면, 개인의 인지적 발달과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를 고찰한 김준호(1996)의 연구는 보다 발전된 연구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김준호는 법의식을 인지발달심리학에서 주로 제기해 온 추론의 영역과 사회학이나 범죄학에서 강조하는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에 해당되는 변수들이⁴⁾ 청소년 비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른 어떠한 법의식 관련 요인 보다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한 인지발달과 그에 따른 도덕성의 발달 보다는 일상적 주위관계와 그에 따른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의 형성이 청소년 비행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4)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변수는 크게 추론과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전자에는 Kohlberg 와 Tapp & Levine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후자에는 법사회환경의 정당성에 대한 정서적 평가, 중화기제,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측면이 사용되었다.

법에 대한 인지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주로 청소년들, 그 중에서 특히 소년범들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 등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Burnett et al., 2004; Grisso et al., 2003). 이 연구들의 관심은 주로 청소년들이 법정에 설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주제에 있었고, 그 능력에서 인지적 차원의 법의식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능력과 관련하여 이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Bonnie, 1990; 1992). 첫째는 ‘이해’(understanding)의 차원으로 이는 재판과정의 목적과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의미한다. 둘째는 ‘추론’(reasoning)으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가’(appreciation)로 왜곡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정보를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해’의 차원이 직접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될 것이다. 위의 연구들은 범법행위에 주로 주목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법 인식에 대한 측정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법의식에서 인지적 차원은 도구로서의 법과 그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다룰 것이다.

청소년의 법사회화는 법의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 법에 대한 냉소주의(legal cynicism), 그리고 도덕적 분리(moral disengagement),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기도 한다(Fagan and Tyler, 2005). 따라서 청소년의 법의식 역시 동일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의 제도적 정당성은 법 제도 및 체계와 관련되는 규칙 및 결정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법과 사회적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평가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분리는 실제 행위의 측면에서 법과 규범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측면이다. 이는 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내면적인 정당화 기제를 포함할 것이다. 법에 대한 평가적 의식과 감정적 의식은 사실 상 이상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한 평가와 감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Ewick와 Silbey(1998)은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세 가지의 해석틀을 구별하였다. 첫 번째 틀은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여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본다("before the law"). 두 번째 틀에서는 법을 하나의 게임처럼 보고, 법이 적절하게 조정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with the law"). 세 번째 틀은 법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바꿀 수도 없다고 본다("up against the law"). 이와 같은 해석틀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된 법의 제도적 정당성과 법에 대한 냉소주의의 영역 안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첫 번째 틀은 법의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틀은 법냉소주의와 관련된 평가의 차원과 함께 감정의 차원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틀도 이상의 두 가지 영역과 연결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법의식의 인지적 차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나타난 청소년 법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청소년 법의식의 개념은 성인의 법의식 개념 중 광의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 법의식 연구는 발달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경우 “도덕성”과 상호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셋째,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청소년 법의식 연구들은 인지추론과 인지발달 측면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는 인지와 행위와의 관계를 관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넷째, 청소년 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법의식의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자체에 대한 조사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법의식과 다른 행위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이는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타당화(validation process) 작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섯째, 최근 사회학을 중심으로 법의식 형성 및 비행과의 연관성을 인지발달 측면이 아닌 사회학습 측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2. 청소년 법의식 척도 개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법의식 평가 척도의 개발이라 함은 사회 지표(social indicators) 생산의 한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회 지표라 함은 사회적 관심 및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하나의 계량적 도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표의 역할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변화방향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고 사회문제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척도’ 혹은 ‘지표’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각 개념들은 ‘보편성’(Universality)을 갖고 핵심 요소들을 가능한 한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청소년의 법의식이란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개념들을 포함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둘째, 척도의 ‘개념적 타당성’(Validity)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념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Parsimony or Simplicity). 즉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지표나 척도로 최대한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한국적 특수성과 청소년의 연령적 특수성이 (Diversity or Particularity)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광범위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의식 관련 문헌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해외의 법의식 연구 또한 법제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에 근거하여 척도개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측정대상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후 측정대상의 내용타당도 확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내용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법의식이란 법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법적 효능감, 법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 준법정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자료의 분석이나 상식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역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출이 되어야 한다. 법의식을 주제로 한 과거의 연구들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측정대상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제 측정문항의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 문항 생산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액면타당도⁵⁾(face validity)의 확보이다. 액면타당도란 특정한 경험적 척도가 특정한 개념과 연관된 통상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액면타당도의 확보는 일면 단순하고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측정문항을 개발하다 보면 사회의 통상적인 합의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으며 설사 통상적인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개인간의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대상과 관련된 이론적, 실제적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측정문항이 개발되고 관련 전문가들의 액면타당도 검토가 끝나고 나면 보다 이론적인 내용타당도의 확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실제 조사를 통해 각 문항들의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내용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법의식 척도 개발의 예비적인 단계이며 실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내용타당도라 함은 개별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construct)의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냐를 의미한다. 내용타당도의 확인 작업은 측정대상 개념에 대한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와 분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히 표준화된 절차나 통계적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결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선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타당도 확인작업 시 고려되는

5) 혹자는 액면타당도를 논리적 타당도(logical validity)라고도 한다.

사항들은 첫째, 모든 측정문항들이 개념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둘째, 만약 개념의 하위영역이 존재한다면 각 하위영역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골고루 선택되었는가?, 셋째, 개별문항의 난이도가 연구 집단들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가?, 넷째, 측정문항의 성격에 비추어 응답항목이 적절한가? 등이 있다.

내용타당도 확인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하나의 단일차원의 개념인지 아니면 하위에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준비에 관한 특성과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작업은 과연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복수의 하위개념 혹은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991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도는 아래와 같이 개념 구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 한국적성연구소(1992)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설 명	문항수
태도 검사	계획성	자신의 진로방향 선택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의 정도	13
	독립성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선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13
	결정성	자신의 진로방향 및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0
능력 검사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의 종류, 직업의 특성, 작업조건, 교육수준, 직무 및 직업세계의 변화경향과 직업정보획득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30
	직업선택	자신의 적성,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15
	의사결정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15

자료: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51-52.

이상의 논의내용을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법의식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광의(廣義)의 법의식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광의의 법의식 개념에 근거하여 청소년법의식을 정의해 보면 청소년법의식이란 “청소년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식의 정의로만 봐도 이는 하나의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의 정의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법의식의 하위영역을 ‘법에 대한 인지적 의식’, ‘법에 대한 평가적 의식’, 그리고 ‘법에 대한 감정적 의식’으로 나누기로 한다.

3. 대표적 법의식 척도 소개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 논의가 끝난 후 곧 바로 척도의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법의식 척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식 관련 양적연구는 국내외에 다수 존재하며 따라서 기 개발되어 있는 척도들 또한 다양하다. 둘째, 청소년은 분명 사회인구학적으로 특수집단에 속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새로운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 과거 성인대상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법의식 측정 척도는 분명 청소년 법의식 척도의 개발에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연구진행의 차원에서, 과거 법의식 척도들은 이미 일정정도 개념적 타당성과 방법론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는 것은 효율적 연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내 법의식 조사 도구

한국법제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국민법의식 조사는 법의식관련 국내 최초의 체계적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조사도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법의식의 개념정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표본을 통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법의식 발전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모범적인 조사연구의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국민법의식은 크게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법생활 관련 의견’, ‘법에 대한 지식과 활용’, 법집행 기관에 대한 의견, 현행법령에 대한 의견’등으로 나누어 조사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면,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문항들은

-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법생활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는

-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경제/행정/노사/교육/교통/행락등)
- 귀하는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집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더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들겠습니까?

-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묻는 질문으로는,

- 귀하는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귀하는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집행 기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는,

-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공정하다	2) 대체로 공정하다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4) 공정하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령에 대한 의견은 동성동본이나 가정의례법, 노사관계법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법제연구원(1991,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법의식 척도는 액면타당도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청소년법의식 연구에의 적용은 상당 수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묻는 문항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다.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준호(1996)은 다음과 같은 법의식 조사문항들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법이라는 말을 들을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적어주세요’의 어구연상어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상을 묻고 있다

다음으로 법적추론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규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왜 사람들이 법이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이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만일 법이나 규칙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 법이나 규칙을 바꿀수 있습니까? 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권위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 나는 경찰과 검사들을 존경한다
- 경찰과 검사들은 정직하다
- 국가지도자나 법조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법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한다.
-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은 공정하다
- 판사들은 정직하다

법사회환경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는

-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흔하다
- 요즘은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훨씬 크다
- 돈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의 법은 사회질서를 위해서보다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 하는것 같다
- 요즘 세상에는 법대로 되는 일이란 별로 없는 것 같다
- 우리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보다는 학력을 더욱 중요시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돈과 배경이 든든해야 출세할 수 있다
- 요즘 세상은 양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 요즈음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세상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특정한 위법행위를 정당화 하는 소위 중화기제의 형성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는

- 남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나도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
- 약속을 잘 어기는 친구와의 약속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
- 나쁜 사람을 심하게 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 나에게 심하게 대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을 혼자만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다른 사람이 잘 지키지 않는 법이나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 부자들의 돈을 조금 훔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 권력있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법이나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
-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법이나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김준호의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 법의식 측정도구의 개발에 참고할 만하다. 첫째, 다른 법의식 관련 조사연구와는 달리 김준호의 연구는 법의식의 단순실태에 대한보고 뿐 아니라 법의식의 제측면(인지적/감정평가적/행위지향적)들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가설의 검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의식 관련 조사연구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적지식이나 활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비해 줄어든 반면 법사회환경의 정당성이나 중화기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묻고 있다.

이수성 연구(1994)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하고 있다. 먼저 어구연상법 (word associ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법이란 말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말”을 묻는다.

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 민법이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다
- 민법은 형법보다 훨씬 더 쓰이고 있다
- 집이나 땅을 파고 살 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 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한 것이다
-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매우 편할 것이다
- 법이란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
- 법에는 나쁜 법도 있다
- 등의 문항들로 묻고 있다. .

법을 준수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 법 준수 이유
 -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애국자니까
 - 법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 대신 만든 거니까
 -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 법은 관청의 명령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귀찮은 일을 당하므로
 - 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살기 좋게 되므로
- 법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측면
 - 법적 소외감(legal alienation)
 - 요즘은 법이 불필요하게 많다
 - 법은 권력과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진 것 같다
 - 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듯하다

- 법에 대한 신뢰감

- 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 요즘은 법보다 돈이나 권력이 훨씬 더 위에 있다
- 돈이나 명예, 권력이 생긴다면 기꺼이 법을 어기겠다
- 요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

- 아직도 판사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듯 하다
-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선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하겠다
- 요즘은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법을 잘 준수 하는것 같다
- 재판을 하면 돈이나 시간이 너무 들어가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
- 범죄 및 형벌에 대한 태도 : 예시문 제시 (이수성 p88)
- 질문 문항 p89
- 조세형 사건에 대한 태도 (p91)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몇 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 한 후 여기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는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법교육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적 상황을 제시 한 후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시문1: 아저씨의 고민

보람이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람이의 아버지는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보람이에게 아버지가 희귀한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은 한 약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람이는 약값의 절반을 가지고 약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그 약을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기 때문에

약값을 전부 받기 전에는 약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는 약국에 몰래 들어가 약을 훔쳐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이튿날 신문에 그 약국의 도난 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보람이는 잘 아는 이웃아저씨는 보람이가 그 약국에서 몰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약국 도난범이 보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 한후 아래의 질문이 던져진다.

1. 아저씨는 보람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고발해야 합니까?
2.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고발해야 합니까?
3. 경찰이 보람이를 체포했습니다. 보람이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보람이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4. 사회를 생각할 때 보람이는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5. 만약 보람이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시문 2: 우정

김씨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소문난 효자입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몇 년전부터 몸져 누워계십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지만 김씨는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사정을 친구인 이씨에게 털어놨습니다. 어느날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본 김씨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김씨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였습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씨는 김씨를 고발해야 합니까?
2. 김씨는 처벌 받아야 합니까?
3. 김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김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김씨의 유

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4. 만약 이씨가 김씨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를 생각할 때 김씨는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위와 같은 방법은 특정 이슈에 대해 매우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긴 하나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시된 상황들이 심지어 법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일관된 견해를 낼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슈라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과연 주어진 상황이 갖는 윤리적, 법률적 딜레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상황의 경우는 ‘안락사’의 법률적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위해서는 안락사 자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예비적 지식들을 모든 청소년이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에 대한 김원기의 조사연구(2000)는 과거 법의식 관련 조사연구의 결과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원기는 법의식을 크게 ‘법에 대한 인식’, ‘한국의 준법수준’, ‘법의 불준수 원인’, ‘준법의지’, ‘불/탈법의 유형’, ‘법준수의지’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아래의 문항들로 조사하고 있다.

1. 법에 대한 인식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필요성)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법에 대한 인상)

우리 사회는 법앞에 평등합니까(법에 대한 평가)

2. 준법 수준

우리 사회의 준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 법 불준수 원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똑같이 나쁜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적 권위체의 정당성

국회의원들을 공정하게 법을 만든다

행정관청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무를 본다

경찰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검찰은 사건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5. 준법의지

당신은 범법행위 목격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6. 범법 유형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할 불법·탈법 유형을 중요도의 순서대로 두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부정부패/청소년범죄/성폭력범죄/경제범죄/강도/환경파괴/유형업소의 불법영업/조직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마약/기타)

7. 법준수의지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은 위반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

2) 해외 법의식 조사 도구

다음은 Richmond Youth Project의 일환으로 1964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수록된 지표들이다. 이 데이터는 Hirschi (1969), Jensen (1972), Matsueda (1982) 등

청소년 비행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연구들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래에 제시한 지표들은 서덜랜드의 차별적접촉이론에서 핵심적인 이론적 개념인 ‘법 위반에 대한 정의(definitions)’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therland and Cressey, 1966). 그리고 ‘중화의 기술’에 해당하는 지표이기도 하다(Sykes and Matza, 1957). 이 지표들은 법의식의 인지적 이해에 대한 문항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도구로서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도덕적 분리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경찰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다. (Policemen try to give all kids an even break.) * 피할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 (It is alright to get around the law if you can get away with it.) * 나는 이 지역의 경찰을 깊이 존중하다.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e Richmond police.)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법을 어긴 사람은 거의 언제나 잡혀서 처벌받는다. (People who break the law are almost always caught and punished.)

	도덕적 분리
권리와 의무	* 차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는 사람은 그 차를 훔친 사람만큼 책임이 있다. (The man who leaves the keys in his car is about as much to blame for its theft as the man who steals it.) * 사람들이 비행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 끼치지 않는다. (Most things that people call "delinquency" don't really hurt anyone. * 출세하기 위해서는(잘나가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 (To get ahead, you have to do some things which are not right.) * 어수룩한 사람들은 속아도 싸다. (Suckers deserve to be taken advantage of.)

다음은 미국 GSS (General Social Survey)에서 골라낸 법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이해
도구로서의 법	* 모든 사법체계는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실수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백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죄가 있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All systems of justice make mistakes, but which do you think is worse? To convict an innocent person or To let a guilty person go free) *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원이 범죄자를 너무 가혹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관대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In general, do you think the courts in this area deal too harshly or not harshly enough with criminals?) *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People who break the law should be given stiffer sentences.) * 사법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How much information do you have about the law enforcement issue? Do you have all of the information you need, most of the information, some information, or very little information?)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법원과 법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How much confidence do you have in courts and the legal system?)

다음은 The Project on Human Development in Chicago Neighborhoods에서 법 냉소주의(legal cynicism)와 관련된 지표들이다(Sampson and Bartusch, 1998).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법은 어기게끔 되어있다. (Laws were made to be broken.)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It's okay to do anything you want as long as you don't hurt anyone.) * 돈을 버는데 옳고 그른 방법이란 건 없다. 오직 쉽거나 어려운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To make money, there are no right and wrong ways anymore, only easy ways and hard ways.)

다음은 형사법체계에 대한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 the Criminal Legal System Scale)에서 고른 지표들이다(Martin and Cohn, 2004). 이 척도에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 경찰, 법, 처벌 등 형사법 체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법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념들인 공평성(fairness), 능력(competence), 그리고 청렴 내지는 정직성(integrity)을 감안하고 있다. 주로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정당성과 냉소주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검사는 유죄판결을 얻어내는 것 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Prosecuting attorneys care more about justice than getting a conviction.)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Most of our laws are fair and just.)
	* 대부분의 경찰은 진실로 정직하고 남을 돕는 일에 신경을 쓴다. (Most police are genuinely honest and concerned with helping others.)
	* 판사들은 대개 공정한 판결을 한다. (Judges usually make fair decisions.)
	*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피고와 피해자에게 공평하려고 한다. (Most defense attorneys are as fair to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s possible.)
	*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In general, prosecuting attorneys do a good job of getting guilty people convicted.)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Most of our laws are effective at protecting people.)
	* 변호사들은 돈 버는 것보다 의뢰인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쓴다. (Defense attorneys care more about their clients than about making money.)

	* 법조인들 중에서 판사가 가장 믿을 만 하다. (Judges are the most trustworthy of all the legal professions.) *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변호를 잘 수행한다. (In general, defense attorneys represent their clients very well.) * 대부분의 검사들은 가능한 한 피해자와 피고에게 공평하려고 한다. (Most prosecuting attorneys are as fair to the victim and defendant as possible.) * 경찰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Police officers treat everyone equally because they are able to ignore prejudice.) * 범죄에 맞게 형벌이 주어진다. (The punishment given usually fits the crime.)
--	--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종종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 (Minorities are often given unfair punishments.) * 변호사들은 승소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도 불사한다. (Defense attorneys are dishonest if it means they can win a case.) * 범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무능력이다. (One reason there is so much crime is because police officers are incompetent.) *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청소년들과 같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괴롭힌다. (Police officers unfairly harass certain groups such as minorities and high-school kids.) * 많은 경찰들이 부패했고 위선적이다. (Lots of police are corrupt and hypocritical.) * 판사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쉽게 매수된다. (Judges are easily "bought off" by corrupt politicians.) *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허술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Our laws are too "loose" and open to interpretation.)

	* 판사들은 선입견과 편견의 영향 하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Judges tend to let bias and prejudice affect their decisions.) * 검사들은 승소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도 불사한다. (Prosecuting attorneys are dishonest if it means they can win a case.) * 많은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A lot of judges make poor decisions.) *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다. (Most defense attorneys don't have the time or resources to do their jobs well.) * 변호사는 범죄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 (Defense attorneys aren't fair to victims because they represent criminals.)
--	--

	정당성
권리와 의무	* 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너무 많다. (There are too many laws that impose on personal freedom.)

다음은 배심원 대상자들의 법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Revised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에 포함된 문항들 중의 일부이다(Kravitz et al., 1993). 주로 인지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정당성과 냉소주의 관련 문항들, 그리고 권리 부분에서 법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이해
도구로서의 법	* 법이 범죄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봐준다. (The law coddles criminals to the detriment of society.) *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가 질서보다 더 중요하다. (In the long run, liberty is more important than order.)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대체로 대법원은 효과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 (The Supreme Court is, by and large, an effectiv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 차별받고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이유로 법정에서 관대하고 특별한 처분을 받을 만 하다. (Because of the oppression and persecution minority group members suffer, they deserve leniency and special treatment in the courts.) * 한명의 결백한 사람은 잘못 수감시키는 것 보다 죄지는 사람들 여러 명을 풀어주는 것이 사회를 위해 더 낫다. (It is better for society that several guilty men be freed than one innocent one wrongfully imprisoned.) * 의뢰인이 유죄임을 믿더라도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It is moral and ethical for a lawyer to represent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even when he believes his client is guilty.)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명백하게 유죄인 사람들이 엄격하고 전문적인 법적 해석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Too many obviously guilty persons escape punishment because of legal technicalities.) * 많은 판사들이 범죄세계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 lot of judges have connections with the underworld.) * 세상에 정직한 경찰이란 없다. (There is just about no such thing as an honest cop.)

	인지적 이해
권리와 의무	*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그것이 유죄를 이끌어낼 유일한 방법이라면 법정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Evidence illegally obtained should be admissible in court if such evidence is the only way of obtaining a conviction.) *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정황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No one should be convicted of a crime on the basis of circumstantial evidence, no matter how strong such evidence is.) *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ny person who resists arrest commits a crime.) * 유무죄를 결정할 때 전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When determining a person's guilt or innocence, the existence of a prior arrest record should not be considered.) * 누구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도청은 불법시 되어야 한다. (Wiretapping by anyone and for any reason should be completely illegal.) * 국민들은 범죄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찰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Citizens need to be protected against excess police power as well as against criminals.) *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체포하거나 검문하는 것을 경찰에게 허용해야 한다. (Police should be allowed to arrest and question suspicious-looking pers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been up to something illegal.) * 개별적 범죄자들의 행위에 의해 위협받는 만큼 우리 사회의 자유는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 (The freedom of society is endangered as much by overzealous law enforcement as by the acts of individual criminals.)
	정당성
권리와 의무	* 떳떳한 국민들은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Upstanding citizens have nothing to fear from the police.)

다음은 형사법정의 배심원 대상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 중의 일부이다(Kassin and Wrightsman, 1983).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이 검찰 측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변호인 측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되었지만, 법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활용가치가 있다. 법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냉소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추가되며,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정당성 관련 태도 측정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인지적 이해
도구로서의 법	* 정황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tenuating circumstances should not be considered - if a person commits a crime, then that person should be punished.)
	인지적 이해
권리와 의무	*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용의자는 분명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A suspect who runs from the police most probably committed the crime.) *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90%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한다. (For serious crimes like murder, a defendant should be found guilty if there is a 90% chance that he committed the crime.) * 정황적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Circumstantial evidence is too weak to use in court.)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일반적으로 경찰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사람만 체포한다. (Generally, the police make an arrest only when they are sure about who committed the crime.)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형사 사건의 변호사는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Defense lawyers don't really care about guilt or innocence, they are just in business to make money.) *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감된다. (Too many innocent people are wrongfully imprisoned.) * 어떤 법들은 어기게끔 되어있다. (Some laws are made to be broken.)

다음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들 중 일부이다(Rubin and Peplau, 1975). 법에 대한 냉소주의와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정당성 관련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있다.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무고한 사람이 잘못 구금되는 경우는 드물다. (It is rare for an innocent person to be wrongly sent to jail.) * 범죄를 저지르고 잘될 수 없다. (Crime doesn't pay.)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죄를 지은 사람이 풀려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흔한 일이다. (It is a common occurrence for a guilty person to get off free in American courts.)
	냉소주의
권리와 의무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 (It is often impossible for a person to receive a fair trial in the USA.)

다음은 민사소송 관련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들 중 일부이다(Hans and Lofquist, 1992).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법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이해
도구로서의 법	* 소송의 범람은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large number of lawsuits show that our society is breaking down.) *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규제한다. (The government has gone too far in regulating business and interfering with the free enterprise system.) *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와 기준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Ensuring the safety of products sold to the public is so important that regulations and standards cannot be too high.) *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A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tell the public about any possibility, however small, that its products might be unsafe.) *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정성을 100%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Requiring that products be 100% safe before they're sold to the public is just too expensive.)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	* 소송인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Most people who sue others in courts have legitimate grievances.) 도정 * 법적 소송을 더 쉽게 함으로써 법원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한다. (By making it easier to sue, the courts have made this a safer society.) 도정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	* 오늘날 사소한 소송들이 너무 많다. (There are far too many frivolous lawsuits today.) 도냉 * 사람들은 어떻게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소송을 한다. (People are too quick to sue, rather than trying to solve disputes in some way.) 도냉 * 민사소송에서 배상받거나 보상받는 금액이 너무 크다. (The money awards that juries are awarding in civil cases are too large.)

이상의 문헌들을 정리해 보면, 법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 대상은 법규범 내지는 제도와 법 행위자 내지는 기관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인지적 이해	정당성	냉소주의	도덕적 분리
도구로서의 법	법의 활용 영역과 그 목적에 대한 이해	법의 존재와 그 법이 실제 실현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당성	법이 작용하는 절차와 그 결과에서 보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법의 사용과 적용에 대한 도덕적 판단
권리와 의무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법적 권리 행사의 정당성 법적 의무의 정당성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법적 의무의 이행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법 준수에 대한 도덕적 판단

(1) 도구로서의 법

① 인지적 이해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법의 활용 영역과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법의 활용과 관련된 지식과 함께, 법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차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법 지식을 객관적으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 사회화가 아직 덜 이루어진 청소년기의 특징과 응답자 입장에서 세부적 법 지식 측정의 현실적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항목 정도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적절할 것이다.

- 사법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GSS)
-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 도구로서의 법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측정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법을 어떠한 도구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측정 항목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의식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이 누구의 도구이고,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와 관련된 항목을 3개 정도 추가하였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가 질서보다 더 중요하다. (K)
-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나치게 규제한다. (H&L)
- 차별받고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이유로 법정에서 관대하고 특별한 처분을 받을 만하다. (K)
- 법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 법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수단이다.

- 형사사법기관은 정권의 도구이다.
- 법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사와 민사로 구분하여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질서 유지의 도구로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평가의 차원에서 측정하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한명의 결백한 사람은 잘못 수감시키는 것 보다 죄지은 사람들 여러 명을 풀어주는 것이 사회를 위해 더 낫다. (K; GSS)
- 의뢰인이 유죄임을 믿더라도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K)
-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GSS)
-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GSS)
- 법이 범죄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봐주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 (K)
- 정황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K&W)

민사 부분에서 법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갈등해결의 도구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일반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에서 두 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 소송의 범람은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L)
-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H&L)
-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와 기준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H&L)
-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H&L)

-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정성을 100%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H&L)
- 갈등상황은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 법은 갈등 해결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② 정당성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정당성의 차원은 법의 존재와 그 법이 실제 실현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와 관련된다. 이는 다시 범규범에 대한 정당성의 차원과 법제도 내지는 법행위자들에 대한 정당성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제도와 법행위자는 다시 법원, 검찰, 변호사, 경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법에 대한 정당성의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이 이 범주에 해당될 것이다.

- 법원과 법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GSS)
- 피할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 (RYP)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M&C)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M&C)
- 범죄에 맞는 형벌이 주어진다. (M&C)
- 법을 어긴 사람은 거의 언제나 잡혀서 처벌받는다. (RYP)
- 무고한 사람이 잘못 구금되는 경우는 드물다. (R&P)
- 범죄를 저지르고 잡힐 수 없다. (R&P)

구체적인 법행위자들이 도구로서의 법을 이용하는 절차 및 결과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법 관련 행위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인 범행위자들인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에 대한 항목들로 각각 구성되었다.

- 경찰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다. (RYP)
- 나는 이 지역의 경찰을 깊이 존중하다. (RYP)
- 대부분의 경찰은 진실로 정직하고 남을 돕는 일에 신경을 쓴다. (M&C)
- 경찰은 편견 없이 모든 국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M&C)
- 일반적으로 경찰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사람만 체포한다. (K&W)
- 검사는 유죄판결을 얻어내는 것 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M&C)
-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M&C)
- 대부분의 검사들은 가능한 한 피해자와 피고에게 공평하려고 한다. (M&C)
- 판사들은 대개 공정한 판결을 한다. (M&C)
- 법조인들 중에서 판사가 가장 믿을 만 하다. (M&C)
- 대체로 대법원은 효과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 (K)
-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피고와 피해자에게 공평하려고 한다. (M&C)
- 변호사들은 돈 버는 것보다 의뢰인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쓴다. (M&C)
-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변호를 잘 수행한다. (M&C)

③ 냉소주의

도구로서의 법이 작용하는 절차와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 대한 평가 및 감정과 관련된 차원이다. 이 범주 역시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항목과 구체적인 범행위자들에 대한 항목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항목은 다시 구체적으로 형사적 부분과 민사적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법은 어기게끔 되어있다. (S&B; K&W)
-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허술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M&C)
-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종종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 (M&C)
- 명백하게 유죄인 사람들이 엄격하고 전문적인 법적 해석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K)
-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감된다. (K&W)
- 죄를 지은 사람이 풀려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흔한 일이다.

(R&P)

- 오늘날 사소한 소송들이 너무 많다. (H&L)
- 사람들은 어떻게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소송을 한다. (H&L)
- 민사소송에서 배상받거나 보상받는 금액이 너무 크다. (H&L)

법행위자들에 대한 냉소주의에 대한 측정 역시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

- 범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무능력이다. (M&C)
-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청소년들과 같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괴롭힌다. (M&C)
- 많은 경찰들이 부패했고 위선적이다. (M&C)
- 세상에 정직한 경찰이란 없다. (K)
- 검사들은 승소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도 불사한다. (M&C)
- 범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검사의 무능력이다.
- 검찰의 활동은 권력자의 의지에 좌지우지된다.
- 많은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M&C)
- 판사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쉽게 매수된다. (M&C)
- 많은 판사들이 범죄자와 결탁하고 있다. (K)
- 판사들은 선입견과 편견의 영향 하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M&C)

- 변호사들은 승소할 수만 있다면 거짓도 불사한다. (M&C)
-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다. (M&C)
- 변호사는 범죄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 (M&C)
- 형사 사건의 변호사는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K&W)
- 변호사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변호한다.

④ 도덕적 분리

개인적 이득 내지는 타인의 이득을 위해 위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법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된다면 위법도 정당화된다.
-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일지라도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다.
-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일지라도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다.
- 죄를 지었을지라도 할 수 있다면 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2) 권리와 의무

① 인지적 이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물론 법적 지식의 정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법사회화 정도와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역시 법과 관련된 지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항목들은 피했다. 형사사법 부분에서 절차와 권리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범주의 특성상 이 항목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와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그것이 유죄를 이끌어낼 유일한 방법이라면 법정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K)
-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정황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K; K&W)
-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K)
-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용의자는 분명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K&W)
- 유무죄를 결정할 때 전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K)
- 누구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도청은 불법시 되어야 한다. (K)
-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90%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한다. (K&W)
- 국민들은 범죄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찰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K)
-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체포하거나 검문하는 것을 경찰에게 허용해야한다. (K)
- 개별적 범죄자들의 행위에 의해 위협받는 만큼 우리 사회의 자유는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 (K)

② 정당성

여기서는 법적 권리와 그 행사의 정당성과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 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너무 많다. (M&C)

- 떳떳한 국민들은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K)
-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들에게 적절하고 명확하게 의무를 부과한다.

③ 냉소주의

법적 권리의 보호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앓는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S&B)
- 돈을 버는데 옳고 그른 방법이란 건 없다. 오직 쉽거나 어려운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S&B)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 (R&P)
- 사람들은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못하면서 과도한 의무만을 부당하게 요구한다.

④ 도덕적 분리

타인의 권리 보호 및 개인의 권리 확보, 그리고 의무 이행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된다.

- 차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는 사람은 그 차를 훔친 사람만큼 책임이 있다. (RYP)
- 사람들이 비행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 끼치지 않는다. (RYP)
- 출세하기 위해서는(잘나가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 (RYP)
- 어수룩한 사람들은 속아도 싸다. (RYP)

-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낫다.
- 불법일지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낼 것이다.

RYP=Richmond Youth Project

S&B=Sampson and Bartusch, 1998

M&C=Martin and Cohn, 2004

K=Kravitz et al., 1993

K&W=Kassin and Wrightsman, 1983

R&P=Rubin and Peplau, 1975

H&L=Hans and Lofquist, 1992

4. 종합논의

지금까지 국내외 법의식 관련 문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문헌들이 존재하는 법의식 문헌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표적인 연구들은 언급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헌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대부분의 국내외 문헌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법의식 연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식의 측정 도구 또한 다분히 성인위주로 제작되었고 그것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얼마나 적절한가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법의식 문헌들은 개념정의 단계에서 광의의 법의식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의식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황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의식을 ‘법에 대한 인지적 의식’, ‘법에 대한 평가적 의식’, 그리고 ‘법에 대한 감정적 의식’으로 나눈 이 연구의 개념적 타당성을 나름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 문헌 검토 결과, 좁게는 구체적 법제도의 차이, 넓게는 법환경이나 법정서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도구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도구사용의 제한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라고 하는 문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규범적인 진술로서 다분히 미국적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사회적 정서가 존재하는 국가 또한 존재하며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 시장과 국가의 경제영역에서의 역할이라는 이슈는 참으로 난해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IV. 결론

IV.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개발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파악에서 시작하여 척도의 생산 및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치는 다분히 연역적(deductive)인 작업이다. 이 연구 또한 법의식의 정확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법의식의 개념은 법감정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의식 정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주어진 법의식 개념에 기반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는 하위영역의 구분과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 척도의 생산과정이다. 이 과정 또한 과거 문헌들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모방이나 답습의 위험은 있으나 과거 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면밀하고 비판적인 검토가 전제 된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단계를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째, 법의식의 개념 자체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가능하다. 둘째,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식 측정도구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준호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나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한국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제도나 정서의 차이로 인하여 조사도구들이 한국에서의 적합성을 갖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조사도구들을 생산해 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구에서 실제 청소년 법의식 측정도구를 생산해 내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또한 존재한다. 척도나 조사도구의 개발은 뛰어난 어느 한 연구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분야, 여기서는

법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등,의 많은 연구진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개념에 따른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도 내용타당도나 액면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다수 연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여러 가지 연구여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 수집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두 번째, 척도 개발의 속성상 하나의 척도가 일단 만들어 지게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부정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척도가 개발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척도의 개발이 중요한 것이며 본 연구진의 판단으로는 철저한 문헌검토와 이후 청소년 법의식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가장 주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청소년 법의식 개발의 가이드라인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달리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직 법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의식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간접적이거나 피상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직 교육과정을 포함한 사회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법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약하기는 하나 이 연구의 성과물이 이후 청소년 법의식의 경험적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시업, 김지영. 2003. 한국인의 법의식:법리(法理)와情理(情理)의 갈등, vol. 9, No.1, 67~79한국심리학회지.
- 김원기. 2000.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준호, 노성호. 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년도 연구보고서.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4년도 연구보고서.
- 김준호.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6년도 보고서.
- 김준호. 1996. 법의식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vol.4,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문용린. 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2 연구보고서.
- 박상철.19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건. 2000. 법사회학. 아르케.
- 이수성.1984. 한국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학 제25권 2-3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 이영희. 2003. 법사회학. 법문사.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문성,구정화. 1991.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연구, 제6호, 한국청소년연구..
- 조영달. 1992. 한국학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민주문화노총.
- 차경수. 1981. 청소년 질서 의식의 실태와 질서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국외 문헌>

- Bonnie, Richard J. 1990. "The Competence of Criminal Defendants with Mental Retardation to Participate in Their Own Defens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1(3): 419-446.

- , 1992. "The Competence of Criminal Defendants: A Theoretical Reformulation."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0: 291-316.
- Burnett, Darla M. R., Charles D. Noblin, and Vicki Prosser. 2004. "Adjudicative Competency in A Juvenile Popul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4): 438-62.
- Ewick, Patricia, and Susan S. Silbey. 1992. "Conformity, Contestation, and Resistance: An Account of Legal Consciousness." *New England Law Review* 26(spring): 731-49.
- Ewick, Patricia, and Susan S. Silbey. 1998. *The Common Place of Law: Stories from Everyday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gan, Jeffrey, and Tom R. Tyler. 2005. "Legal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Justice Research* 18(3): 217-241.
- Grisso, Thomas, Laurence Steinberg, Jennifer Woolard, Elizabeth Cauffman, Elizabeth Scott, Sandra Graham, Fran Lexcen, N. Dickon Reppucci, and Robert Schwartz. 2003. "Juveniles' Competence to stand trial: A Comparison of Adolescents' and Adults' Capacities as Trial Defendants." *Law and Human Behavior* 27(4): 333-363.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Gary F. 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562-75.
- Kassin, Saul M. and Lawrence S. Wrightsman. 1983.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Juror Bias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423-442.
- Kravitz, David. A., Brian L. Cutler, and Petra Brock.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Original and Revised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Law and Human Behavior* 17: 661-677.
- Martin, Tracey A. and Ellen S. Cohn. 2004. "Attitudes Toward The Criminal Legal System: Scale Development and Predictors." *Psychology, Crime & Law* 10(4): 367-391.
- Matsueda, Ross 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August): 489-504.
- Rubin, Zick and Letitia Anne Peplau.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 65-88.

- Sampson, Robert J. and Dawn J. Bartusch. 1998. "Legal Cynicism and Tolerance of Deviance: The Neighborhood Context of Racial Differences." *Law and Society Review* 32(4): 777-804.
- Silbey, Susan S. 2005. "After Legal Consciousnes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 323-68.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 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ition. Philadelphia: Lippincott.
- Sykes, Gresham M. and David Matza.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64-670.